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 - 0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2021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의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1. 1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모집분야

분 야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집광채광, 소수력, 바이오(펠릿), 폐기물, 수열에너지 등

신청자격

-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한 기업

모집절차

구 분	세부절차
1차 평가	에너지원별 해당 면허를 득하여야 하고(필수), 미취득시 평가에서 제외
2차 평가	①기술인력 보유, ②시공실적, ③기업신용도, ④중소기업 육성, ⑤제조기업, ⑥산업기여도, ⑦하자보증기간, ⑧생산물책임보험(의무), ⑨A/S전담기업, ⑩사업기간 준수율, ⑪A/S미이행실적 및 근무 기간, ⑫의무사후관리수행, ⑬보급사업 감점이력 ⑭사건사고 유발 ⑮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3차 적격심사	2차 평가 점수를 70점 이상 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에 의거하여 심사
최종선정	1차, 2차 평가(점수 70점 이상) 및 최종 3차 적격심사에 모두 통과한 기업 선정

□ 배점항목 및 기준

○ 1차 평가: 해당 에너지원 분야에 대해 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미취득 업체 평가 제외

구분		분야별 면허 종류
열 분야	태양열, 수열에너지	모집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지 열	모집 공고일 현재 ①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 공사면허 보유 업체로,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또는 「지하수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기업(①, ②의 면허 모두 등록한 기업)
전기 분야 (태양광, 소형풍력 등)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열·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모집 공고일 현재 ①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업체로, ②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①, ②의 면허 모두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		모집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2차 평가

배 점 항 목		배 점	비 고
2차평가	①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12점), 근무경력(12점) - 신규 고용인력(4점)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기능사 가점(+1점) **최대 배점은 기존 27점유지	27 * 27점 초과하여 점수 획득 불가	계량평가
	② 시공실적 - 설치용량(20점), 설치개소(10점)	30(최소 16점부여)	
	③ 기업신용도	20	
	④ 중소기업 육성(9점) ⑤ 제조기업 여부(3점) ⑥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3점) ⑦ 하자보증기간(5점) ⑧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⑨ A/S전담기업(3점)	23	
	⑩ 사업기간 준수율(-16점~+6점) ⑪ A/S미이행실적 및 근무기간(-4점~+2점) ⑫ 의무사후관리수행(참여제한~0점) ⑬ 보급사업 감점이력(-5점~-1점) ⑭ 사건사고 유발(참여제한~-5점) ⑮ 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0점~+2점)	가감점 (참여제한~+10점)	
2차 소계		100	

○ 3차 적격심사

내 용	비 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심사	적합 또는 부적합

- * '20년도 공단 자체감사 결과 사업 위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주의·경고 등의 제재조치 반영
- * 기타사항은 별첨의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전자민원” 의 “3.참여 시공기업 신청”에 접수
- 접수기간 : '21.01.20(수) ~ '20.01.29(금) (매일 09:00 ~ 18:00)

※ 제출서류 목록

- 시스템 입력·등록 필수, 필히 공고 내 세부내용(별첨 등) 참고하여 제출 요망

항 목		제출서류
1차	○ 공사 면허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 동의서	○ 해당 분야 공사면허증 1부 ○ 별도 센터 홈페이지 공지 - 동의서는 접수기한 내 제출 必
2차	① 기술인력 보유 - 보유현황(12점), 근무경력(12점) - 신규 고용인력(4점)	○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관련 증빙 문건 등 각 1부
	② 시공실적 - 설치용량(20점), 설치개소(10점)	○ 시공실적증명서 1부(건당) * 발주자 발급 시 추가 제출서류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등 2종 이상 - 내용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필요시 센터 현장확인) * 태양광은 2kW개소 미만 시 총합에서 3kW 단위로 인정(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 8번 참조)
	③ 기업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 육성(9점) ⑤ 제조기업 여부(3점) ⑥ 산업기여도[포상/전시회 등](3점) ⑦ 하자보증기간(5점) ⑧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여부(의무) ⑨ A/S전담기업(3점) ⑩ 중소기업 제조 설비 사용(2점)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1부 ○ ISO인증서 등 기술인증 증빙 1부 ○ KS인증서 등 제조기업 인증 1부 ○ 수상실적(표창 등), 후원, 전시회참가 확인서 1부 ○ 보험 계약체결 진행 확인 서류 1부 (청약서 등) ○ 설치확인서 1부

※ 기타 추가 증빙자료

- 상기 해당 항목에 별도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첨부 파일에 첨부하여 등록·제출 요망

□ 유의사항(필독)

- 공고내용 숙지미숙 및 자료 미제출, 입력(기록)오류 등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등록·제출 후 자료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수정 일체 불가 (별도의 공단의 요청 없이 추가 자료 제출 불가)
- 시스템 상 계량평가 점수 확인기간 동안은 추가자료 제출 및 서류교체 등의 수정 일체 불가
- 이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1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는 신청자에게 공개될 예정
- 지열분야 천공공사면허 증빙서류는 발급일(증명서 하단)이 '21.01.29(금) (서류접수마감일)까지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 작성내용을 허위작성 하였거나, 제출 증빙자료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특히 허위작성일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참여제한의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 입력 시 기능사(배점1점)를 기사(배점2점)란에 입력하여 추가점수 획득코자 하는 등의 고의성 여부 등
-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해선 필요시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COIVD-19 같이 현장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 가능
-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및 신재생 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의 공지사항 참조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참여기업 담당자 앞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안내전화 : 1855-3020)

【별 첨】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 기술인력보유 배점기준(총점 27점)

- 기술인력은 '21년 사업 진행 중에 상근하여야 함
- 기술인력 변경시 변경후 90일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해야함(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의 “참여기업 시공 신청”란에 신청 가능)
 - 미신고 적발 시, 보급사업 배점 감점 적용(주의, 경고, 참여제한 등)
-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술인력 산정기준에서 제외함
- 신규인력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기능사 등으로 추가로 가점을 획득하여도 최대 27점부여

① 에너지원별 해당 자격증

에너지원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2. 바이오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
3. 풍력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4. 수력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
7. 해양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8. 폐기물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
9. 지열에너지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산업)기사만 해당
11. 수열에너지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분류를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www.q-net.or.kr)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확인 가능

** 에너지원의 분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기준 및 범위를 따름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12점)

○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1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12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12	12	12
	② 6인	10	11	12
	③ 5인	8	10	11
	④ 4인	6	9	10
	⑤ 3인	4	6	9
	⑥ 2인	3	4	6
	⑦ 1인 이하	0	0	0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7	7	7
	② 6인	6	6	6
	③ 5인	5	6	6
	④ 4인	4	5	6
	⑤ 3인	3	4	5
⑥ 2인	2	3	4	
⑦ 1인 이하	0	0	0	

③ 기술인력 근무경력(12점)

○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1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태 양 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 점
12점 한도	가.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이상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12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10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8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6
	⑤ 200개월 미만	⑤ 100개월 미만	4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5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4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3
④ 200개월 미만	④ 200개월 미만	2	

④ 신규 고용인력(4점)

-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당 1점, 청년 고용*일 경우 2점(기존 인력 중복 불가)
- 신규 고용인력(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일('21.01.14)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한함(4대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보급사업 참여제안을 신청한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근무경력과 신규 고용인력을 합계하여 산정
 - 신규 고용인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중복 인정하지** 않음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 근무경력 각각 12점 만점으로 계산함(신규고용 별도 4점)
3.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예) A업체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분야의 겸업인 경우, A업체의 소속 B씨는 한 분야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
4.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인 기술인력이 해당분야의 **(산업)기사 2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 후 탈락 조치**
5. 에너지원별 해당 기술인력분야의 기술인력만 인정되므로 필히 기술분야 확인 요망
6. 2021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20년 10월 16일까지 채용된 고용자까지 인정, 단, 신규고용인력은 '21년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 이전에 고용된 인원에 해당)
7.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산업)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8.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산업)기사로 같음하여 인정**
9.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제출한 자격증만 인정
10.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서류만 인정(화면인쇄 불인정)
 - * 경력수첩 제출 시 해당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확인 불가시 불인정**
11. 기술인력의 90일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12.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의 월단위 합계이며, 기술인력별 1개월(30일)이 되지 않은 잔여일수는 합산하지 않음
 - 예) 홍길동(20개월 20일), 홍길순(3개월 10일)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합계는 23개월(홍길동 20개월 + 홍길순3개월)
13.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에 해당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모든 근무경력만을 합산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다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예) 홍길동이 한국기업(주)에 입사하여 24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기업(주)에 재입사하여 12개월 근무했을 경우 홍길동의 근무경력은 36개월이 됨
14. 기술인력이 해당 신청기업 내에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인정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이 신청기업에 소속된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15. 신청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일치해야하며,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일치 시 선정배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 16. 해당 에너지원 분야별 기업 **면허취득일로부터** 기술인력 근무경력 인정
- 17. 1인 이상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태양광기업에 대하여 가점 1점
* 시공기업이 첨부한 기술인력 자격증과 신규인력 자격증을 판단하여 부여

□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30점)

① 설치용량(20점)

한도	태양광(kW)	태양열(m ²)	지열(kW)	수열에너지(kW)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kW, m)	배점
20점 한도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20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18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16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14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2

② 설치개소(10점)

한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기타	배점
10점 한도	300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10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8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6
	50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4

※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실적 인정기간 : 2018년 1월1일 ~ 2020년 12월31일)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4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도급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별도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 면제
5.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제출가능

-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도급종류, 용량, 관리번호 등 기입을 필수
- 공고일 이전의 설치확인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향후 평가 시 확인)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21년 01월 29일까지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8. 태양광 설비가 2kW/개소 미만인 경우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는 아래와 같이 따름
 - 시공실적 설치개소는 3kW당 1개소로 인정, 설치용량은 30%만 실적 인정
- * 태양광 0.3kW 설비 12개소 시공한 경우, 실적개소 1개소(0.3kW x 12개소/3kW)인정 및 설치용량 1kW(0.3kW x 12개소 x 0.3)적용(소수점아래 버림)

□ 기업신용도 배점기준(총점 20점)

구 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20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20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BB+, BB0, BB-	15
	기업신용평가등급 B+, B0, B-	10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미제출	0

※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21.01.29)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21.01.29)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0점처리)
2.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 기업자격 및 사업수행실적(계획)(계속, 총점 23점, 가감점 10점~참여제한)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23점 한도	<p>○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최대 9점)</p> <table border="1"> <tr> <td>기준</td> <td>중소기업</td> <td>중견기업</td> <td>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ISO14001 중 1</td> </tr> <tr> <td>배점</td> <td>7</td> <td>5</td> <td>2</td> </tr> <tr> <td>대상</td> <td colspan="2">전체 에너지원</td> <td>해당 에너지원</td> </tr> </table> <p>※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등 미제출 기업은 가점 없음 * 유효기간이 포함된 서류는 서류제출 기간(21.01.29) 전 유효기간 만료 시 점수 미부여</p>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ISO14001 중 1	배점	7	5	2	대상	전체 에너지원		해당 에너지원	9						
	기준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 녹색전문기업, 벤처기업, ISO9001, ISO14001 중 1																
	배점	7	5	2																
대상	전체 에너지원		해당 에너지원																	
<p>○ 공고일 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에너지원별 적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p>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기 준</th> <th>배 점</th> </tr> <tr> <td colspan="2">○ 중소기업 외</td> <td>2</td> </tr> <tr> <td colspan="2">○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td> <td>3</td> </tr> </table> <p>※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제외</p>	기 준		배 점	○ 중소기업 외		2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3	3										
기 준		배 점																		
○ 중소기업 외		2																		
○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제출)		3																		
<p>○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여도(2개 항목 합산점수 최대3점 까지) 가. 수상실적</p> <table border="1"> <tr> <th>수상횟수</th> <th>배 점</th> </tr> <tr> <td>3회 이상</td> <td rowspan="2">2</td> </tr> <tr> <td>2회</td> </tr> <tr> <td>1회</td> <td>1</td> </tr> </table> <p>나. 전시회참가</p> <table border="1"> <tr> <th>일반 전시회</th> <th>배 점</th> <th>에너지대전 (공단주최)</th> <th>배 점</th> </tr> <tr> <td>3회 이상</td> <td>3</td> <td rowspan="3">1회</td> <td rowspan="3">2</td> </tr> <tr> <td>2회</td> <td>2</td> </tr> <tr> <td>1회</td> <td>1</td> </tr> </table> <p>※ 수상실적 및 전시회 참가는 에너지원별로 적용 ※ 수상 : 공고일 기준 3년간 수상실적(신·재생에너지 관련분야로 지자체의장 및 공공기관장 이상, 기업(단체) 또는 대표이사가 수상한 경우) ※ 전시회 : '20.1.1. ~ '20.12.31.까지(에너지대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 단순 전시회 관람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에너지대전 및 기타 전시회 신청 분(주관 및 주최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국가로 관련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또는 온라인 전시회 참가인정(주관 및 주최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국가로 관련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 상장 및 전시회 참가 확인서(양식 붙임) 제출 시 인정 가능 * 에너지대전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표창 수상실적으로 인정</p>	수상횟수	배 점	3회 이상	2	2회	1회	1	일반 전시회	배 점	에너지대전 (공단주최)	배 점	3회 이상	3	1회	2	2회	2	1회	1	3
수상횟수	배 점																			
3회 이상	2																			
2회																				
1회	1																			
일반 전시회	배 점	에너지대전 (공단주최)	배 점																	
3회 이상	3	1회	2																	
2회	2																			
1회	1																			

□ 기업자격 및 사업수행실적(계획)(계속, 총점 23점, 가감점 10점~참여제한)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23점 한도 (계속)	<p>○ 하자보증기간</p> <table border="1" data-bbox="335 398 1241 577"> <thead> <tr> <th>기 준</th> <th>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 하자보증기간 3년(기본)</td> <td>3</td> </tr> <tr> <td>○ 하자보증기간 4년</td> <td>4</td> </tr> <tr> <td>○ 하자보증기간 5년</td> <td>5</td> </tr> </tbody> </table>	기 준	배 점	○ 하자보증기간 3년(기본)	3	○ 하자보증기간 4년	4	○ 하자보증기간 5년	5	3~5						
	기 준	배 점														
	○ 하자보증기간 3년(기본)	3														
○ 하자보증기간 4년	4															
○ 하자보증기간 5년	5															
<p>* '21년 주택·건물지원사업 수행 시 필요한 하자보증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p> <p>○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21년 가입 예정) 여부(에너지원별 적용)</p> <p>* 보험 계약체결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 청약서 등) 제출 <상품명 : ①생산물배상책임보험(손해사고 기준) ②완성작업위험 ③대위권 포기 특약 ④보상한도 : 대인대물 일괄 1억원 ⑤보험 기간 : 1년></p> <p>* 보험증권상 위의 ①, ②, ③, ④, ⑤의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야 함</p>	의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p>○ '20년 센터에서 지정한 A/S전담기관(에너지원별 적용) (단, 전담기관 약정 미이행, 실적이 없는 기업은 가점부여 제외)</p>	3															
가감점 (참여제한~6점)	<p>○ 사업기간 준수율(에너지원별 적용)</p> <p>- 사업기간 준수율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 설치완료한 사업 수 ÷ 전체 승인사업 수) × 100%</p> <p>*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 주택·건물지원사업 설치확인 제출일(공휴일포함)</p> <table border="1" data-bbox="335 1281 1241 1541"> <thead> <tr> <th>기 준</th> <th>배 점</th> </tr> </thead> <tbody>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100%(에너지원별 구분)</td> <td>+6</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90%이상(에너지원별 구분)</td> <td>0</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80%이상(에너지원별 구분)</td> <td>-5</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70%이상(에너지원별 구분)</td> <td>-7</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60%이상(에너지원별 구분)</td> <td>-9</td> </tr> <tr> <td>사업기간 준수율이 60%미만(에너지원별 구분)</td> <td>-16</td> </tr> </tbody> </table> <p>※ '20년 주택지원, 건물지원사업(시범사업포함) 사업승인 실적 기준</p> <p>※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까지 사업(변경)기간 내 설치확인 신청을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설치완료 사업으로 인정하여 산출</p> <p>※ 사업 완료기한이 참여업체 모집 공고일 이후의 사업은 산출에서 제외</p> <p>※ 주택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 부속사업 모두 포함하여 산출</p> <p>※ 신규업체(실적부재), 준수율 90%이상의 경우, 가점 0점 처리</p> <p>※ 전체 에너지원별 승인사업 수가 10건 미만일 경우, 가점(6점) 부가 제외</p> <p>※ 추가공고로 인한 '2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다음 해 참여기업선정에 포함 예정</p>	기 준	배 점	사업기간 준수율이 100%(에너지원별 구분)	+6	사업기간 준수율이 9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0	사업기간 준수율이 8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5	사업기간 준수율이 7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7	사업기간 준수율이 6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9	사업기간 준수율이 60%미만(에너지원별 구분)	-16	-16~+6
기 준	배 점															
사업기간 준수율이 100%(에너지원별 구분)	+6															
사업기간 준수율이 9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0															
사업기간 준수율이 8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5															
사업기간 준수율이 7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7															
사업기간 준수율이 60%이상(에너지원별 구분)	-9															
사업기간 준수율이 60%미만(에너지원별 구분)	-16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 불시점검을 통해 시공이 완료 되지 않은 곳이 사업기간 서류 제출 하였을 경우 제재 예정 ※ COVID-19로 인한 사업기간 미 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결과 최대2개월(60일)의 유예기간을 한시적 인정하나, 가점은 부여 하지 않음(단, 최대2개월(60일) 유예기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준수 시 위의 벌점 부과 예정) * 주택지원 - 태양광 30일, 태양열, 소형풍력 및 연료전지 45일, 지열, BIPV 60일 유예기간 부여 * 건물지원 - 태양광 45일. 나머지 에너지원 60일 유예기간 부여 ※ 다음 해 참여기업 감점(사업기간 준수율) 배점 변동(강화) 예정	

□ 기업자격 및 사업수행실적(계획)(계속, 총점 23점, 가감점 10점~참여제한)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가감점 (참여제한 ~5점) (계속)	○ '20년 A/S미이행 실적(감점·에너지원별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기 준</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5건인 경우</td> <td>-1</td> </tr> <tr> <td>○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6~10건인 경우</td> <td>-2</td> </tr> <tr> <td>○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1~20건인 경우</td> <td>-3</td> </tr> <tr> <td>○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21건 이상인 경우</td> <td>-4</td> </tr> </tbody> </table>	기 준	배점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5건인 경우	-1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6~10건인 경우	-2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1~20건인 경우	-3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21건 이상인 경우	-4	-4~+2
	기 준	배점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5건인 경우	-1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6~10건인 경우	-2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11~20건인 경우	-3										
	○신청자의 A/S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건수의 합이 21건 이상인 경우	-4										
	※실적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건물지원사업에 한정함('20년 1월 ~ '20년 12월까지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처리하지 않은 건) ※ COVID-19로 인한 사업기간 미 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결과 5일의 유예기간을 한시적 인정(최대 25일) ※ 다음 해 참여기업 감점(A/S미이행 실적) 배점 변동(강화) 예정											
	○ '20년 A/S전담인력 근무 개월 수(가점·에너지원별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기 준</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A/S 전담업체 고용인력 근무개월 수 합 400개월 이상</td> <td>1</td> </tr> </tbody> </table>	기 준	배점	○A/S 전담업체 고용인력 근무개월 수 합 400개월 이상	1							
	기 준	배점										
	○A/S 전담업체 고용인력 근무개월 수 합 400개월 이상	1										
※'20년 A/S 전담업체 선정 기준으로 반영하여 산정												
○ '20년 A/S이행률 (가점·에너지원별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기 준</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고장접수 지원센터에 등록된 A/S 이행률 100%</td> <td>1</td> </tr> </tbody> </table>	기 준	배점	○고장접수 지원센터에 등록된 A/S 이행률 100%	1								
기 준	배점											
○고장접수 지원센터에 등록된 A/S 이행률 100%	1											
※이행률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하며 ('20년 1월 ~ '20년 12월까지 접수일 기준, 5일(공휴일 포함) 이내 결과보고 완료건만 A/S인정)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p>○ 의무사후관리수행 결과(감점·에너지원별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준</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td>100%</td><td>0</td></tr> <tr><td>99%이상~100%미만</td><td>-3</td></tr> <tr><td>98%이상~99%미만</td><td>-6</td></tr> <tr><td>97%이상~98%미만</td><td>-9</td></tr> <tr><td>96%이상~97%미만</td><td>-12</td></tr> <tr><td>95%이상~96%미만</td><td>-15</td></tr> <tr><td>94%이상~95%미만</td><td>-18</td></tr> <tr><td>93%이상~94%미만</td><td>-21</td></tr> <tr><td>92%이상~93%미만</td><td>-24</td></tr> <tr><td>91%이상~92%미만</td><td>-27</td></tr> <tr><td>90%이상~91%미만</td><td>-30</td></tr> <tr><td>90%미만</td><td>참여기업 선정배제</td></tr> </tbody> </table> <p>※ 접수마감일(20.10.31)까지 홈페이지에 등록 제출 한 건을 기준으로 산정</p>	기 준	배점	100%	0	99%이상~100%미만	-3	98%이상~99%미만	-6	97%이상~98%미만	-9	96%이상~97%미만	-12	95%이상~96%미만	-15	94%이상~95%미만	-18	93%이상~94%미만	-21	92%이상~93%미만	-24	91%이상~92%미만	-27	90%이상~91%미만	-30	90%미만	참여기업 선정배제	참여기업 선정배제 ~0
기 준	배점																											
100%	0																											
99%이상~100%미만	-3																											
98%이상~99%미만	-6																											
97%이상~98%미만	-9																											
96%이상~97%미만	-12																											
95%이상~96%미만	-15																											
94%이상~95%미만	-18																											
93%이상~94%미만	-21																											
92%이상~93%미만	-24																											
91%이상~92%미만	-27																											
90%이상~91%미만	-30																											
90%미만	참여기업 선정배제																											

□ 기업자격 및 사업수행실적(계획)(계속, 총점 23점, 가감점 10점~참여제한)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가감점 (3점~참여제한) (계속)	<p>○ 모집공고일 기준, 보급사업 감점이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준</th> <th>해당기한</th> <th>배점</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시행일 기준, 참여제한 '정지' 기업 포함)</td> <td>최근 2년간</td> <td>-5</td> </tr> <tr> <td>보급사업 추진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td> <td rowspan="2">전년도</td> <td>-3</td> </tr> <tr> <td>보급사업 추진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td> <td>-1</td> </tr> </tbody> </table> <p>* 내년 참여기업 선정 공고시 감점 배점 강화 예정 ** 산업부 고시[별표 3], 센터 공고[별표 12]붙임 참조!</p>	기 준	해당기한	배점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시행일 기준, 참여제한 '정지' 기업 포함)	최근 2년간	-5	보급사업 추진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년도	-3	보급사업 추진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5 ~ -1
	기 준	해당기한	배점										
'사업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최초시행일 기준, 참여제한 '정지' 기업 포함)	최근 2년간	-5											
보급사업 추진관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전년도	-3											
보급사업 추진관련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p>○ 사건사고 유발 참여기</p> <p>-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시공한 설비 중 사건·사고 발생 시 (해당 사건·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업체 귀책사유 확인 건에 한하며, 해당 기간은 의무사후 관리기간(3~5년)으로 제한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준</th> <th>배 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발생 횟수</td> <td>1회</td> <td>- 5</td> <td rowspan="3">· 해당 설비 소손 등 경미한 피해</td> </tr> <tr> <td>2회</td> <td>- 10</td> </tr> <tr> <td>3회</td> <td>참여제한(1~2년)</td> </tr> </tbody> </table> <p>※ 진상규명 위원회를 통한 조사결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설비의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 등), 횟수에 관계없이 -10점 또는 참여제한</p>	기 준	배 점	비 고	발생 횟수	1회	- 5	· 해당 설비 소손 등 경미한 피해	2회	- 10	3회	참여제한(1~2년)	참여제한 ~ -5
기 준	배 점	비 고											
발생 횟수	1회	- 5	· 해당 설비 소손 등 경미한 피해										
	2회	- 10											
	3회	참여제한(1~2년)											

구분	판 단 요 소	배 점
	<p>(1~2년) 부과 가능</p> <p>※ 소비자원 및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1670-4260)에 접수된 태양광, 사기 피해 등을 야기한 시공업체에 대해 위의 별점 기준을 적용</p> <p>○ 중소기업 제조설비 사용(조달청 등록제품 한함)</p> <p>- 기존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시공한 전체 사업 중, 최소 1개소 이상 중소기업 제조제품(모듈, 인버터)사용 시 가점(2점) 부여 (실적 인정기간 : 2018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p> <p>* 모듈, 인버터 모두 사용 했을 경우 2점, 둘 중 1개만 사용 했을 경우 1점</p> <p>* 실적 인정기간은 사업승인 기준('18년 주택지원 사업부터 해당)</p> <p>* 태양광에너지지원에만 해당</p>	0 ~ +2

- 붙임. 1. 전시회 참가 확인서('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여도' 관련) 1부.
2.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보급사업 감점이력' 관련) 1부.
3. 사업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보급사업 감점이력' 관련) 1부. 끝.

[붙임 : 전시회 참가 확인서]

전시회 참가 확인서

전시회 이름	예시) 2020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전시회기간	예시) 2020. 1. 8 ~ 1. 11
전시분야(전시물)	예시) 태양광 모듈, 태양열 집열기 등
참가기업 상호	예시) (주)가나다라마바
부스번호	예시) B홀 C-00
주최 또는 주관기관	예시) 한국에너지공단

상기와 같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예시)2020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전시회 참가를 확인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예시) 주최 또는 주관기관명 (직인)

[붙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 3]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제한기준
시공기준 위반	가. 제17조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나. 제19조제2항의 의무적용대상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시공한 경우	2년이상
	라. 제17조제2항의 대상사업 중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1년이상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 나. 설비의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센터의 장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라.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비를 관리한 경우	2년이상
	마. 설치확인시 동일건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바. 공사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년이상
사업내용 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다.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라. 센터의 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년이상
	마. 센터의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설치용량·사업 기간 등)을 변경한 경우	1년이상

※ 상기의 제한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5년까지로 한다.

[붙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

사업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제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주의	경고
1. 사업 승인 후 설치완료전까지 동일건 2회이상 신청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	
2. 사업 승인 후 설치완료전까지 동일건 3회이상 신청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
3. 설치완료후 3년 이내 동일건 3회 이상 신청자 민원이 발생한 경우		○
4. 사업신청 및 접수 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
5. 기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 경우	○	○

* 사업계약, 설비시공, 사후관리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반에 대해 신청자(소유주)가 신문고 등 공식 수단을 통해 민원제기하여 시공자의 과실로 확인된 경우